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26호)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79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이인선의원안)	3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물가연동제 도입(이인선의원안, 김미애 의원안)	8

I. 개요

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752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3. 17.
- (3) 회 부 일 : 2026. 3.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라 8구간으로 나뉘어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

2.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867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6. 4. 28.
- (3) 회 부 일 : 2026. 4.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8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실질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도 세금만 누진적으로 상승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이인선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율(제55조) ☐ 구간별 세율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 구간 조정 (이인선의원안)																																				
<table border="1"> <thead> <tr> <th>종합소득 과세표준</th><th>소득 세율</th></tr> </thead> <tbody> <tr> <td>~1,400만</td><td>6%</td></tr> <tr> <td>1,400만~5,000만</td><td>15%</td></tr> <tr> <td>5,000만~8,800만</td><td>24%</td></tr> <tr> <td>8,800만~1.5억</td><td>35%</td></tr> <tr> <td>1.5억~3억</td><td>38%</td></tr> <tr> <td>3억~5억</td><td>40%</td></tr> <tr> <td>5억~10억</td><td>42%</td></tr> <tr> <td>10억~</td><td>45%</td></tr> </tbody> </table>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세율	~1,400만	6%	1,400만~5,000만	15%	5,000만~8,800만	24%	8,800만~1.5억	35%	1.5억~3억	38%	3억~5억	40%	5억~10억	42%	10억~	45%	<table border="1"> <thead> <tr> <th>2027년 종합소득 과세표준</th><th>소득 세율</th></tr> </thead> <tbody> <tr> <td>~1,500만</td><td>6%</td></tr> <tr> <td>1,500만~5,400만</td><td>15%</td></tr> <tr> <td>5,400만~9,500만</td><td>24%</td></tr> <tr> <td>9,500만~1.6억</td><td>35%</td></tr> <tr> <td>1.6억~3.2억</td><td>38%</td></tr> <tr> <td>3.2억~5.4억</td><td>40%</td></tr> <tr> <td>5.4억~10.8억</td><td>42%</td></tr> <tr> <td>10.8억~</td><td>45%</td></tr> </tbody> </table> ☐ 시행일 : 2027. 1. 1.(이인선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인선의원안)	2027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세율	~1,500만	6%	1,500만~5,400만	15%	5,400만~9,500만	24%	9,500만~1.6억	35%	1.6억~3.2억	38%	3.2억~5.4억	40%	5.4억~10.8억	42%	10.8억~	45%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세율																																				
~1,400만	6%																																				
1,400만~5,000만	15%																																				
5,000만~8,800만	24%																																				
8,800만~1.5억	35%																																				
1.5억~3억	38%																																				
3억~5억	40%																																				
5억~10억	42%																																				
10억~	45%																																				
2027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세율																																				
~1,500만	6%																																				
1,500만~5,400만	15%																																				
5,400만~9,500만	24%																																				
9,500만~1.6억	35%																																				
1.6억~3.2억	38%																																				
3.2억~5.4억	40%																																				
5.4억~10.8억	42%																																				
10.8억~	45%																																				

* 이인선의원안 2026. 3. 17. 발의(의안번호 17526)

☐ 개정안은 현행 과세표준구간을 일부 조정하여 소득 계층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2026년에 비해 2027년에 모든 구간에서 과세표준 구간금액을 상향하고 있음.

□ 현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 종합소득(명목소득)과세표준을 8개 구간으로 나누고 과세표준 금액 상승에 따라 구간별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세 체계로 이루어짐.

먼저 소득세율의 연혁을 살펴보면, 1949년 법 제정시에는 17개 과표 구간에 최고세율은 65%였고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1975년 70%에서 1989년 50%, 1994년 45%, 1996년 40%, 2002년 36%, 2005년 35%로 2000년대까지 최고세율이 계속적으로 인하되는 추세였는데, 2012년 이후부터는 종합소득금액 8,800만원 초과구간이 세분화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되고 있는 추세임.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및 최고세율은 2011년 종합소득금액 8,800만원 초과(35%)에서 2012년 종합소득금액 3억원 초과(38%)로 인상되었고,

2014년에는 최고세율 구간(38%)이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인하되었다가, 이후 다시 2017년에 5억원 초과 40%, 2018년에 5억원 초과 42%로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으며, 이후 2021년부터는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어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되었으며, 2023년에는 하위 2개 소득구간의 확대 조정이 이루어졌음.

[2009년~2023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추이]

구간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2017	2018~ 2020	2021~ 2022	2023~
~1,200만원		6%							6%
1,200만원 ~1,400만원	16%	15%							
1,400만원 ~4,600만원									
4,600만원 ~5,000만원	25%	24%							24%
5,000만원 ~8,800만원									
8,800만원 ~1.5억원	35%	35%	35%	35%				35%	
1.5억 원 ~3억 원				38%	38%	38%		38%	
3억 원 ~5억 원			40%			40%			
5억 원 ~10억 원			40%		42%	42%	42%		
10억 원 ~						45%	45%		

주: 귀속소득 연도 기준

□ 개정안과 같이 과세표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조세의 실질 부담을 조정하는 효과가 기대됨.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하위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¹⁾이 이루어졌

1)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2021년~2022년)	종합소득과세표준(2023년)
6%	~1,200만	~1,400만
15%	1,200만~4,600만	1,400만~5,000만
24%	4,600만~8,800만	5,000만~8,800만
35%	8,800만~1.5억	<좌 동>
38%	1.5억~3억	
40%	3억~5억	
42%	5억~10억	
45%	10억~	

지만, 물가 상승 속도를 고려할 때 서민들의 실질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정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6.
소비자 물가지수	94.9	97.6	99.5	102.5	107.7	111.6	114.2	116.6	120.0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100 기준

특히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세법 개정이 있었던 2022년에 비해 2026년 6월을 기준으로 물가가 약 11.4%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추가적인 조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재정경제부는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하위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적인 과표구간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7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물가연동제 도입(이인선의원안, 김미애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율(제55조) ○ 구간별 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종합소득 과세표준</th><th>소득 세율</th></tr> </thead> <tbody> <tr><td>~1,400만</td><td>6%</td></tr> <tr><td>1,400만~5,000만</td><td>15%</td></tr> <tr><td>5,000만~8,800만</td><td>24%</td></tr> <tr><td>8,800만~1.5억</td><td>35%</td></tr> <tr><td>1.5억~3억</td><td>38%</td></tr> <tr><td>3억~5억</td><td>40%</td></tr> <tr><td>5억~10억</td><td>42%</td></tr> <tr><td>10억~</td><td>45%</td></tr> </tbody> </table>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세율	~1,400만	6%	1,400만~5,000만	15%	5,000만~8,800만	24%	8,800만~1.5억	35%	1.5억~3억	38%	3억~5억	40%	5억~10억	42%	10억~	45%	☐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물가조정계수 반영 ○ 구간별 세율 (이인선의원안) - 2027년 종합소득과세표준 <table border="1"> <thead> <tr> <th>2027년 종합소득 과세표준</th><th>소득 세율</th></tr> </thead> <tbody> <tr><td><u>~1,500만</u></td><td>6%</td></tr> <tr><td><u>1,500만~5,400만</u></td><td>15%</td></tr> <tr><td><u>5,400만~9,500만</u></td><td>24%</td></tr> <tr><td><u>9,500만~1.6억</u></td><td>35%</td></tr> <tr><td><u>1.6억~3.2억</u></td><td>38%</td></tr> <tr><td><u>3.2억~5.4억</u></td><td>40%</td></tr> <tr><td><u>5.4억~10.8억</u></td><td>42%</td></tr> <tr><td><u>10.8억~</u></td><td>45%</td></tr> </tbody> </table> - 2028년 이후 세율구간별 종합소득과세표준 = 전년도 구간별 종합소득과세표준 × (1 + 해당연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김미애의원안) - 세율구간별 종합소득과세표준 = [전년도 구간별 종합소득과세표준 × (1 + 해당연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시행일: 2027.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7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세율	<u>~1,500만</u>	6%	<u>1,500만~5,400만</u>	15%	<u>5,400만~9,500만</u>	24%	<u>9,500만~1.6억</u>	35%	<u>1.6억~3.2억</u>	38%	<u>3.2억~5.4억</u>	40%	<u>5.4억~10.8억</u>	42%	<u>10.8억~</u>	45%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세율																																				
~1,400만	6%																																				
1,400만~5,000만	15%																																				
5,000만~8,800만	24%																																				
8,800만~1.5억	35%																																				
1.5억~3억	38%																																				
3억~5억	40%																																				
5억~10억	42%																																				
10억~	45%																																				
2027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세율																																				
<u>~1,500만</u>	6%																																				
<u>1,500만~5,400만</u>	15%																																				
<u>5,400만~9,500만</u>	24%																																				
<u>9,500만~1.6억</u>	35%																																				
<u>1.6억~3.2억</u>	38%																																				
<u>3.2억~5.4억</u>	40%																																				
<u>5.4억~10.8억</u>	42%																																				
<u>10.8억~</u>	45%																																				

* 이인선의원안 2026. 3. 17. 발의(의안번호 17526), 김미애의원안 2026. 4. 28. 발의(의안번호 18679)

☐ 개정안은 매년 과세표준 설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이른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김미애의원안은 2027년부터, 이인선의원안은 2028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전년도 구간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 소득세 체계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상승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

누진세 과표구간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가가 상승할 경우, 실질소득이 증가하지는 않았음에도 명목소득만 상승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가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평균세율·한계세율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²⁾.

예를 들어 2020년에서 2025년까지 물가상승률과 명목소득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명목소득 인상으로 인해 일부 증가된 소득금액이 높은 단계의 과표구간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세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실질 세후소득은 감소하게 됨.

2) Bracket Creep효과.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세후 소득 감소의 예시]

연도	명목소득	세금	세후 소득	실질세후소득	세율변화
2020년	8,500만원	1,470만원	7,030만원	7,030만원	최대 24% 적용
2025년	9,350만원	1,734.5만원	7615.5만원	6923.2만원	일부 소득 35%적용

* 2020년에서 2025년으로 10%의 물가상승 가정

이러한 과세 방식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체 소득계층에서 과세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구간과 적용세율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체증적 과세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음.

실제 2007년 대비 2025년까지의 누적 물가상승률이 49.5%임을 고려할 때, 소득세 과세표준이 현재와 같이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실질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07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5년
소비자 물가지수	78.0	89.9	93.0	94.9	97.6	99.5	102.5	116.6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실질 조세부담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야 하지만, 매년 법률개정 절차를 반복할 경우 과도한 입법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표구간 등을 물가수준에 자동으로 연동시켜 실질소득

세 부담 변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둘째, OECD 회원국 중 약 58%의 국가가 물가연동 세제를 적용³⁾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OECD 회원국 중 미국, 캐나다 등 22개국에서 물가연동 세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중 20개 국가는 과세표준을 물가와 연동 중인 상황임⁴⁾.

미국은 1981년부터 물가 상승에 따라 납세자가 더 높은 세율 구간을 직면하게 되는 등 조세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고,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산정된 생계비조정지수⁵⁾를 활용하고 있음.

캐나다는 소득세율 구간 등을 산출할 때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비율인 물가연동률⁶⁾을 전년도 수치에 곱하는 방식의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셋째, 과세표준에 물가를 연동함으로써 자산 보유자와 임금 생활자

3) 과세표준을 물가와 연동하고 있는 국가는 약 53%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비교연구”, 2022

5)

$$* \text{생계비조정지수} = \frac{\text{해당연도 소비자물가지수}}{\text{기준연도 소비자물가지수}} - 1$$

6)

$$* \text{물가연동률} = \frac{\text{전년도 9월 30일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text{전전년도 9월 30일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간의 실질적 소득 격차가 커지는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아지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자산가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나 임금 생활자의 경우 이러한 물가상승효과가 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아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일부 상쇄할 경우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자산 보유자와 임금 생활자 간의 실질적인 소득 격차가 증대되는 문제를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물가연동제의 도입은 적정 조세부담 유지를 위한 입법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물가상승률 외의 다양한 조세정책적 요인이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자동조정장치가 합목적적인 정책수단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행 소득세 체계 내에서도 세율 및 과세표준을 비롯하여,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을 조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증가된 실질 세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⁷⁾ 특히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 물가상승이 세입 및 계층별 소

7) 일례로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소득공제 한도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공제제도 신설 등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득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⁸⁾과 더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뿐만 아니라 세제 전반에 일괄적으로 물가상승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 구간의 자동 조정과 관련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도 개정안에 대하여 중장기 과세기반 확보 및 과세형평, 제도 효율성 등을 토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예산정책처는 이인선의원안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2027년 2.1조 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44.6조원(연평균 8.9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또한, 김미애의원안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2027년 0.6조원, 2031년 9.5조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23.6조원(연평균 4.7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8) Tax distortions from inflation, IMF Working Papers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31년)]

(단위: 조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이인선의원안	△2.1	△7.5	△8.6	△11.4	△14.9	△44.6	△8.9
김미애의원안	△0.6	△2.6	△4.3	△6.7	△9.5	△23.6	△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57